

학교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	사건유형	구상금
원고	●●●●●●●●보험주식회사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3명
판결선고일	2018. 08. 08. 원고일부승소	비고	
사건개요	<p>원고는 피보험자 소외 ■■■■■■■■■■ 주식회사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임. 2012.6.15. 09:00경 ★★레일바이크 내에서 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던 중 제2바이크 운전자이던 피해학생이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제1바이크와 충돌하여 탈선하게 되고 이후 제3바이크 사이에 끼이게 되어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총 99,100,000원을 원고가 지급하였고 이 중 손해책임비율 50%에 상응하는 금액 49,500,000원을 □□□□□□□□와 공동으로 하여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음.</p>		
주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 ☆☆☆,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p>원고에게, ① 피고 인천광역시는 49,550,000원, 피고 □□□□□□□□□□□□□□는 피고 인천광역시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7,746,159원, ② 피고 ◇◇◇은 9,910,000원, 피고 □□□□□□□□□□□□□□는 피고 ◇◇◇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549,232원, ③ 피고 ☆☆☆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549,2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p>		
판결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레일바이크 운행은 비록 소외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피고 과실 외에도 소외회사의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이 경합되어 발생한 공동 불법행위이므로 피고와 소외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여 책임부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음 (책임분담비율을 소외회사 70%, 피고 30%로 정함) 		
결론	<p>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 ☆☆☆,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		